

본 자료는 일본전문도서관협회의 학술지「専門圖書館」 2018년 9월호 (통권 291호) pp.58~62 에 실린 글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와 공개에서의 권리 처리

스도 마사히코(數藤 雅彦) _ 고조(五常)법률회계사무소

1. 머리말

전문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와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사례 연구(2장) 후, 사례에 대한 법률 문제를 설명하고(3장),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최근의 법제도 정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기술한다.

2. 사례 연구의 설정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와 공개에 있어서는 어떤 권리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가? 전문도서관 소장 자료의 내용은 도서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은 대부분의 도서관에 해당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를 설정한다.

Q. 자체 도서관 내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저작권 등의 권리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까?

- A. 저작권 등의 권리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이하 ①에서 ⑥의 순서로 검토합니다.
- ① 자료가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해당함
 - ②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저작권이 소멸되었는가?)
↓ 해당하지 않음(소멸되지 않음)
 - ③ 저작권이 미치는 이용 형태에 해당하는가?
↓ 해당함
 - ④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권리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지 않음
 - 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 ⑥ 저작권 이외의 권리(저작자 인격권, 초상권 등)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3. 사례 연구

1)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디지털 아카이브 대상 자료가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전문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출판된 도서와 잡지에 추가하여 지방신문, 그림, 지도, 도면, 설문조사보고서, 기관의 년사, 기관의 홍보 자료, 기관내 회의록이나 사내 발간 자료 등 다양하다. 이들 자료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관한 권리 처리는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3.6에서 기술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가리킨다(저작권법 2조 1항 1호. 이하 동법을 “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창작적이지 않은 표현 등은 “저작물”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2018년도 전국연구집회가 도쿄 위민즈 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는 문장은 그 사실을 표현하고자 하면 누가 써도 동일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않고, “저작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

만 전문도서관 소장 자료의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에 머물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소장 자료가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전제로 설명하겠다.

(2)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설명에 앞서 법률용어로서의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제목의 소설을 창작한 경우, 나는 소설A의 “저작자”이며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소설A의 저작권을 친구 B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는 B가 되는 한편 창작한 “저작자”는 여전히 내가 된다. 본 논문에서도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에 유의하기 바란다.

(3) 특수한 저작물

상기 예와 같이 저자 1명이 소설 1편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구조는 단순하다. 그러나 현실의 저작물은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법은 몇몇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 공동 저작물

예를 들면 공동저자 논문처럼 2명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공동 저작물이 된다(법 2조 1항 12호).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법 65조 1항, 2항).

- 업무 저작물

기업의 연사나 홍보자료 등에는 직원이 업무 상 집필하고 법인 명의로 발표된 것이 있다. 이 경우 업무 저작(법 15조 1항)물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집필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또 직무 저작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이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는 법인 명의의 저작권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영화 저작물

기업 PR영화 등의 동영상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상의 “영화 저작물”에는 극장용 영화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널리 포함될 수 있다(법 2조 3항 참조). 저작권법상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본 논문에서는 상세한 내용은 생략) 실무적으로는 동영상 발주 계약 등에서의 저작권 취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단, 실제로는 계약서 등의 서류까지는 체결되지 않고 권리의 귀속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예도 많다고 생각됨).

2) 공공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자료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이 이미 소멸되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에, 저작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법 62조 1호)와 저작권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법 62조 2호),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 있다.

(2) 보호기간의 만료

- 원칙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다(법 51조 2항). 계산 방법으로는 저작자 사망일의 다음해부터 기산되기 때문에(법 57조), 예를 들면 1971년 6월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TPP11협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 그 저작자의 저작물은 2021년 12월 말일까지 저작권이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에는 저작권이 소멸된다.

- 예외

보호기간에는 아래 표와 같이 많은 예외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70년 이전의 저작물(특히 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해서는 구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호)의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전이나 대전 중의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시(戰時), 가산(加算)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종류	보호기간
무명, 변명(變名) 저작물	공표 후 50년(법 52조)
단체 명의의 저작물	공표 후 50년(법 53조)
영화 저작물	공표 후 70년(법 54조)
계속적 간행물 (예) 신문, 잡지	매 책, 매 호, 매 회의 공표 후 50년(법 56조 1항)
순차 공표 저작물 (예) 연재기사	최종 부분의 공표 후 50년(법 56조 2항)

보호기간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전문도서관이 각 도서관 별로 가진 소장 자료의 특색을 감안하여, 보호기간의 경과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흐름도 등을 작성하는 것이 유익하다.

- TPP11 협정 발효에 수반된 보호기간 연장

TPP11 관련 법안(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체결에 수반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성립됨으로써 앞으로 TPP11 협정(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발효에 수반하여,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TPP11 협정의 발효 시기는 현재(2018년 7월 시점)는 미정인데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저작권이 미치는 이용인가?

소장 자료가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에도 저작권이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 행위는 통상은 디지털 복사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형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에는 저작물의 복제권(법 21조)이 영향을 미치고, 후자에는 공중 송신권(법 23조 1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권리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1) 권리 제한 규정이란?

저작권이 미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서는 권리 제한 규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권리 제한 규정의 내용은 많은 종류로 나뉘지는데, 전문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예를 들면 (1)사적 사용 목적의 복제, (2)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3)비영리 상영 등을 꼽을 수 있다

- 사적 사용 목적의 복제

예를 들면 개인이 자료를 읽기 위해 복사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그 외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법 30조 1항). 단 기업 내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통상은 사적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전문도서관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국립국회도서관이나 정령으로 인정된 도서관 등에서는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법 31조 1항 2항). 단 법인이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 목적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시행령 1조의 3 제1항 6호) 전문도서관에서 이 규정에 의한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비영리 상영

비영리 상영으로 저작물의 상영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법 38조 1항, 여기서는 공중 송신은 포함되지 않음). 단 비영리 목적이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도서관에서 이 규정에 의한 상영 등이 가능한 도서관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과 재정(裁定)제도

저작권의 권리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법 63조 1항, 2항 참조). 그러나 소장 자료 중에는 저작권자가 불명인 것이나 저작권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은 재정제도를 마련했다.

재정제도란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67조 1항 참조). 재정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상세한 절차는 문화청 웹사이트 참조).

“상당한 노력”의 부담이나 보상금의 사전 공탁이라는 부담에서 재정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2018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에서는 사전 공탁이 불필요하게 되었지만, 영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6) 저작권 이외의 권리

3장의 1)에서 5)까지 저작권에 관한 권리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소장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에는 저작권이외의 권리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과 소유권, 초상권은 각각 별개로 독립된 권리라서 하나의 자료 속에 병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이프와 필름 등의 영상 자료에는 아래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 ① 자료 그 자체(물체): 소유권
- ② 자료 속의 영상 등(저작물): 저작권
- ③ 영상 속의 판별 가능한 용모, 자태: 초상권

이 때문에 저작권이 처리된 경우라도 다른 권리까지 동시에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저작자 인격권

저작자가 가진 저작자 인격권에는 공표권(법 18조), 성명 표시권(법 19조), 동일성 유지권(법 20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소장 자료 일부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초상권 등

예를 들면 법인의 기록 영상에서 직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친 경우에는 영상 내용이나 공개 방법에 따라 직원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초상권에 대해 법률에서 명문화한 것은 없으나, 참고가 되는 판례(최신판례 2005년 11월 10일 민집(民集) 59권 9호 2428페이지)에서는 용모 등

을 승낙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위법이 되는지는 “피 촬영자의 사회적 지위, 활동 내용, 촬영 장소, 촬영 목적, 촬영 형태, 촬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 촬영자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 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지”여부에 따라 판단되었다(동 판례에서는 촬영이 위법인 경우에는 그 사진의 공표도 위법으로 해석되고 있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초상권의 판단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는 것이 유익하다.

4.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최근의 법 정비

마지막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최근의 법 정비 동향도 소개한다.

1) 저작권법의 2018년 개정

2018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는 아카이브의 이용 활용 촉진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의 정비 등으로 (1)미술관 등의 전시 작품의 해설 소개를 위한 태블릿 단말기 등의 이용, (2)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이 재정제도를 이용할 때의 사전 공탁 불필요, (3)국립국회도서관에서 외국 도서관으로의 절판 등 자료의 송신 등이 개정되었다(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2) 지식재산추진계획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8”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이 중점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2020년까지 출범을 목표로 국가의 분야 횡단형 통합 포털인 “Japan Search(가칭)” 구축을 추진하여 2018년을 목표로 시범서비스할 계획이다.¹⁾

1)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8, p. 29.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8.pdf>

5. 마치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시도하는 현장에서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권리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진할 수 없다”고 한다. 법률은 아직 자료의 자유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 소극적인 기관도 있다.

법률을 “장애”나 “벽”처럼 생각하여 사고가 고정되어 버리면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진척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기술해온 바와 같이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존재하는 자료라도 법률 규정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디지털 아카이브가 가능한 여지는 있다. 전문도서관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업무절차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적법한 이용과 위법한 이용을 구분하여, 많은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권리 처리를 개관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각 도서관에서 소장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